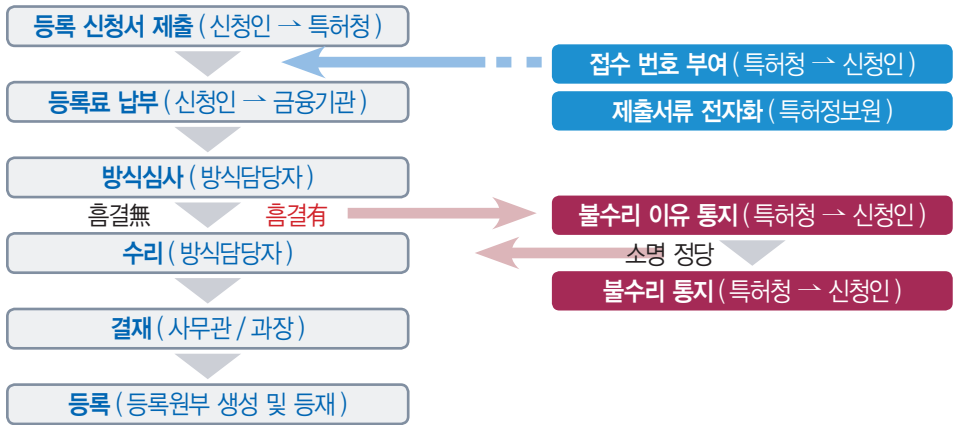


# 01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?

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에 관한 권리의 발생·변경·소멸 및 기타 특허권에 관련된 등록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,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거나 기재된 사항의 총칭

※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공적 장부를 등록원부라 하고,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인정된 사항을 등록사항이라 함



# 02 기본 등록 업무

## (1) 신규설정 등록

### ① 정의

출원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등록결정(또는 심결)이 된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절차

※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은 설정등록을하면 3년간 유효하며, 상표는 10년간 유효함

### ② 구비서류

#### ■ 납부서 (구분항목 : 설정특허·등록료) 1부

- 등록료가 면제인 경우에도 신규설정을 위한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※ 서식은 “특허청 홈페이지 (www.kipo.go.kr) 중앙 하단 →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→ 민원서식 다운로드”에서 서식번호 제 16호 납부서 (구분항목 : 설정 특허·등록료)를 다운로드

- 감면사항 증빙서류 (감경 · 면제 대상인 경우에만 한함)
  - ※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송되는 [납입고지서 및 영수증]을 통해서 납부서 및 기타증빙 서류 없이 납부가능

### ③ 납부방법

- 은행, 우체국에 직접납부
  -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[납입고지서 및 영수증]과 함께 은행, 우체국에 직접납부
  - ※ 우체국은 납입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
  - ※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, 특허로 홈페이지(www.patent.go.kr) → 특허관리 →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
- 인터넷에서 납부
  - 특허로 홈페이지 (http://www.patent.go.kr) →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
- 납부서 제출을 통한 신규설정 등록료 납부
  -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(서식번호 제 16호)를 출력 · 작성하여 통상환증서 (우체국에서 발생)와 함께 우편발송
  - 특허청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설정등록료를 직접납부
  - 특허로 홈페이지 (http://www.patent.go.kr)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설정등록료 납부

### ④ 납부기간

- 특허 · 실용신안 · 디자인
 

특허(등록)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(등록)료를 납부하여야 함 (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 8조 5항)

  - ※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(등록)료를 추가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 (단, 1개월 이내에 20%, 2~3개월 이내에는 30%, 4~6개월 이내에는 50%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함)
- 상표
 

상표등록료 (지정상품추가등록료) 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

  - ※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,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
  - ※ 상표 등록은 추가 납부 기간이 없음

## (2) 연차 등록료 납부

### ① 정의

특허, 실용신안 (1999. 6. 30. 이전 및 2006. 10. 1. 이후 출원), 디자인의 설정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

※ 존속가능기간 (특허 20년, 실용신안 10년, 디자인 15년) 내에서 최초설정등록 (3년)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임

### ② 구비서류

#### ■ 납부서 (구분항목 : 연차특허 · 등록료) 1 부

※ 서식은 “특허청 홈페이지 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중앙 하단 →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→ 민원서식 다운로드”에서 서식번호 제 16호 납부서 (구분항목 : 연차 특허 · 등록료)를 다운로드

※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 의뢰서를 통해서 납부서 없이 납부 가능

### ③ 납부방법

#### ■ 은행, 우체국에 직접납부

-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와 함께 은행, 우체국에 직접납부

※ 우체국은 수납의뢰서가 없어도 납부자번호만으로 납부가능

※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, 특허로 홈페이지 ([www.patent.go.kr](http://www.patent.go.kr)) → 특허관리 → 특허보관함에서 재발급 가능

#### ■ 인터넷에서 납부

- 특허로 홈페이지 (<http://www.patent.go.kr>) → 수수료관리에서 카드납부 또는 지로납부 가능

#### ■ 납부서 제출을 통한 연차등록료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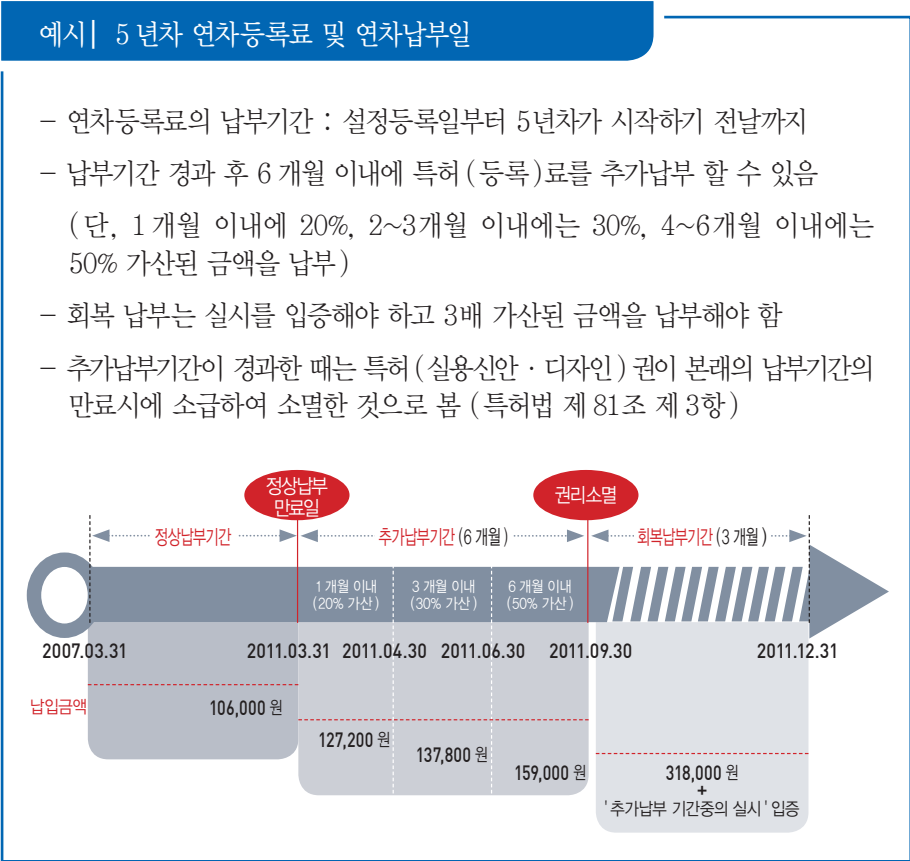
-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서 (서식번호 제 16 호)를 출력하여 통상환증서 (우체국에서 발생)와 함께 우편발송

- 특허청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납부서 및 연차등록료를 직접납부

- 특허로 홈페이지 (<http://www.patent.go.kr>)에서 서식작성기를 통해 납부서 제출 후 연차등록료 납부

### ④ 납부기간

등록료가 납부되어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 년도의 특허료를 미리 납부



### (3)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

#### ① 정의

상표의 설정 등록된 권리 (10년) 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등록

- ※ 상표 (서비스표, 단체표장, 업무표장,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) 권의 갱신 제도 변경 (2010. 7. 28.)  
: 존속기간 갱신 등록 출원 →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

#### ② 신청 · 납부기간

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별지 [(제 11 호 서식)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] 를 제출하고 접수번호 (납부자번호) 를 부여받아 신청서 제출일 다음날까지 존속기간갱신 등록료를 납부

- ※ 등록 신청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함  
다만,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가능 (상표법 43조 2항 단서)



### 특허 등록료의 보전 補填 제도 특허 · 실용 · 디자인 · 상표 모두 적용

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(존속기간 갱신 등록)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

단,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당초의 납부기간(정상납부기간, 추가납부기간 포함)을 경과한 경우에 그 보전은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.2배를 납부해야 함



### 소멸권리회복제도 | 특허법 제 81 조의 3 제 3 항, 특허법시행규칙 제 55 조의 2

특허(등록)료 추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 실시중인 권리에 한하여 추가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신청하고 정상특허(등록)료의 3배를 납부하면 소멸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제도

## 03 변동 등록 업무

### (1) 권리 이전 등록

#### ① 정의

-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
-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함
  - ※ 다만,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(특허법 제 101조, 상표법 제 56조)

#### ② 구비서류

- 권리이전등록신청서 (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8호) 1부
- 양도증 1부 :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
- 양도인 인감증명서 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 : 발급일 6개월 이내

- 양도인 인감
- 위임장 (대리인의 경우) 1통 (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)
- 회사의 분할·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의 경우 양도·양수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필요

## (2) 실시 (사용) 권 설정

### ① 정의

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

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

즉 실시권은 특허권 (실용신안, 디자인)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이고, 사용권은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임

#### 전용실시권 사용권

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“독점 실시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

#### 통상실시권 사용권

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, 통상실시권은 전용 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없음

### ② 구비서류

- 실시권 (사용권) 설정등록신청서 1부
-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: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의 형태
- 제 3자의 허가, 인가, 동의,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
-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
- 위임장 (대리인의 경우) 1통 (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)

## (3) 말소등록

### ① 정의

말소등록이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 (사용)권,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, 사망, 계약해제, 명의인의 승낙,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함

## ② 구비서류

- 말소등록 신청서 1부 (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)
-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
- 제 3 자의 허가, 인가, 동의,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
-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(법인은 법인증명서) 1통
-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 6월 이내)
  -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(작성 후 6월 이내) 1통
  - 이종출원의 등록권리자가 같은 경우 동일자에 선등록된 권리 포기 후 등록할 때 인감증명서 불필요
- 위임장(대리인의 경우) 1통(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)
-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※ 말소등록신청서에 대한 등록료는 건당 5,000원이며,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주일입니다. 권리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시 특허청 고객지원실(042-481-5226) 또는 특허고객 상담센터(1544-8080)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 (4) 근질권 설정

### ① 정의

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(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놓은 경우)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함



**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**

[설명] KIKI 가 친구인 POPO 에게 돈을 일천만원 빌렸는데 KIKI 가 당장 돈을 상환(변제)하지 못할 경우 KIKI 가 가지고 있는 일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POPO 가 보관하면서 돈을 갚을 경우 보석을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를 질권 설정에 비유할 수 있다. 만약 KIKI 가 채무를 변제하는 않는다면 POPO 는 합법적으로 그 보석을 처분해서 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.

→ 특허권자(질권설정자) : KIKI      질권자 : POPO      특허권 : 보석

## ② 구비서류

- 질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(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)
-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(예 : 질권설정계약서)
  -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 (송달) 증명원을 첨부
- 제 3 자의 허가, 인가, 동의,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통
-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 (법인은 법인증명서) 1통
-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(발행일 6월 이내)
  -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(작성 후 6월 이내) 1통
- 위임장 (대리인의 경우) 1통 (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)

# 04 등록 관련 문의

- 특허고객상담센터 ☎ 1544-8080 (전국 어디서나)
- 특허청 등록과 ☎ 042) 481-5247



### 등록신청시 주요 불수리 사유

- 신규설정등록
  - 설정 등록료 미납, 등록료 부족 납부 (보전기간 경과 후 불수리)
  - 출원번호 오기재
  - 출원인과 등록료 납부서상의 등록권리자가 다른 경우 등
- 변동등록
  -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일체성 불인정 (간인 · 씬 (seal) 등 없음)
    - ※ 제출된 서류가 여러장으로 된 경우 모든 장에 인감 · 서명을 하거나, 간인 · 씬 (seal)로 일체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
  - 등록권자의 주소 등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등
  - 인감증명서와 신청서 인감날인 상이
- 연차등록료 납부
  - 납부기간 경과
  - 납부연차 오기재 및 연차등록료 중복납부 등
  - 등록번호 오기재 및 기본디자인이 소멸한 경우
    - ※ 등록신청서에 불수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부자 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소명기회 부여